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 해설

朴彌洙

(社)韓國建設安全技術協會 常任顧問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 6. 11. 법률 제4560호)”의 제정으로 동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의무완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1993. 11. 20. 개정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1994년 3월 29일자로 개정·공포되었다.

동개정내용 중 건설업과 관련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1.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규모 조정(제12조)

사업주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선임대상사업의 규모를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총공

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도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로 조정되었음)로 상향조정하였음.

〈개정내용〉

제1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①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보건법 해설

시행하는 사업

2.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조치 강화(제30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8조)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가 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규정되었으나 제1항 4호의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시행규칙 제30조”에 제4항을 신설하고, 산업재해예방조치가 필요한 작업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그 작업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상의 지침 및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 등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제5항을 신설하였음.

<개정내용>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도급인인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토사·구축물·공작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피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표준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6.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7.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8.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규칙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술상의 지침 및 영 제26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의 내용에 의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준 명시(제32조, 별표 18)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규모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비의 적정한 사용에 관해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시행령 제26조의 3)함에 따라

– 동전문기관의 인력·시설기준 등을 규정하고(제3항 신설)

– 동기관의 지정·지도감독, 수수료 및 안전관리비 사용지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음(제4항 신설).

<개정내용>

제32조(안전관리비의 사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은 건설업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

보건법 해설

관의 지정·지도감독, 수수료 기타 안전관리비 사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4. 안전교육제도의 개선

(1) 사내안전보건교육의 강사자격기준 확대 등(제33조, 제33조의 2, 제34조, 별표 7, 별표 8, 별표8의 2)

사내안전보건교육의 대상별(관리감독자, 생산직 근로자)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노동부고시)에 각각 분산 규정됨으로 혼란이 있었으나

– 직무교육과의 체계를 맞추기 위해 시행규

칙으로 통합 규정토록 개정하였으며

– 사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부 인사의 초청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교육강사의 자격기준을 확대한 것임.

〈개정내용〉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설비기준(제32조 관련)

구 분	시 설	인 력 기 준	설 비
1. 본 부	1. 사무실 66m ² 이상 2. 장비실 33m ² 이상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원 가. 건설안전관리기술사 1인 이상 나. 건설분야 기사(건설안전기사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 1급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다. 건설분야 기사 2급이상으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라.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학과 졸업한 자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2. 지도대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원	1. 가스농도측정기 2. 산소농도측정기 3. 재료강도시험기 4. 진동측정기 5. 비파괴검사기 6. 이동식사다리 7. 수준기 8. 줄자 9. 지도차량
2. 지 부 (특별시· 직할시 및 도 단위)	1. 사무실 33m ² 이상 2. 장비실 17m ² 이상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원 가. 건설안전관리기술사 또는 건설분야 기사 1급 이상으로 건설안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나. 건설분야 기사 2급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다.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학과 졸업한 자 또는 건설분야 기사 2급 이상으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2. 지도대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원	본부의 경우와 동일

보건법 해설

③ 사업주는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 내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분야의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별표 8>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제33조 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가. 정기 교육	생산직종사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사무직종사근로자	매월 1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년간 24시간 이상
나. 채용시 및 작업 내용변경 시 교육	당해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자를 제외한 자	8시간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시간 이상
	영 별표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자를 제외한 자	16시간 이상
다. 특별 교육	영 별표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자	2시간 이상

2.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교육(제38조 제2항 관련)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가. 사업주		4시간 이상
나.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		6시간 이상

3.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39조 제2항 관련)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신 규	보 수
가. 관리책임자	6시간이상	6시간이상
나. 안전관리자	34시간이상	24시간이상
다. 보건관리자	34시간이상	24시간이상
라. 산업보건의	21시간이상	6시간이상
마. 안전관리대행기관종사자	34시간이상	24시간이상
바. 보건관리대행기관종사자	34시간이상	24시간이상

4. 자체검사원 교육(제42조 제5항 및 제43조 제2항 관련)

교 육 과 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직무 교육	—	6시간이상
나. 양성 교육	—	28시간이상

5. 양성교육(제44조 제2항 및 제45조 제2항 관련)

교 육 과 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안전관리자양성교육	—	136시간이상
나. 보건관리자양성교육	—	136시간이상

<별표 8의 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제33조 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 육 내 용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보건법 해설

나.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 육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교 육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사내안전·보건교육의 면제범위를 확대한 것은

– 무재해달성을 평소 안전관리업무가 양호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정기교육의 일부를 면제해 줌으로써 교육실시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 시켜 줌과 동시에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활동을 유도하고 사내집합 또는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던 근로자 정기교육에 따른 생산활동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통신 교육과 날로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산업사회에 부응하여 보다 전문적인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정기 교육이 불필요하므로 이를 면제토록 한 것임.

지정교육기관의 인력 등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은

– 교육실시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최소화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부담을 경감 시켜 주기 위한 것임.

〈개정내용〉

제33조의 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 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3) 별칙성 교육대상범위완화 등(제38조)

별칙성교육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 대해 재해예방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그 대상을 종전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및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규정하였으나 “산업재해로 인하여 연간 2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교육대상범위를 완화하는 한편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등으로 개정하였음.

〈개정내용〉

제38조(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2조 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라 함은 산업재해(교통재해·질병 등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술적인 개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연간 2인 이상의

보건법 해설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당해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 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 중 교육을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자의 명단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실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일시 및 장소 등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제39조 제4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건설현장의 소장) 및 안전관리자는 받아야 할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도록 하였으나 불필요한 업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제거하는 한편 신청의 간소화를 위해

- 신규교육의 경우는 선임일로부터 7일 이내에

- 보수교육의 경우는 교육을 받아야 할 연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각각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별지 제 2호 서식)를 당해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함.

〈개정내용〉

제39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 또는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3. 보건관리자

4. 산업보건의

5.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 2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교육의 경우에는 선임일부터 7일 이내에,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할 연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당해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8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5.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제44조, 제45조의 2)

보건법 해설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에 선임되어야 할 안전관리자의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의 양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가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한시적 기간은 법시행령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교육에 사용되는 교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도록 강제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내용〉

(1) 시행령 제7조(안전관리자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의 한시적 적용) 별표 제4 제7호 및 제8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실시한다.

(2) 규칙 제44조(안전관리자 양성교육)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에 선임되어야 할 안전관리자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영 별표 4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 2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교육실시기관의 인력·시설·장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6. 건강진단실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사업장의 범위 완화(제99조의 2)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는 보고서의 제출 등을 생략하고, 동시에 지방노동관서의 업무량도 경감시키기 위해 종전에는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2월 말까지 건강진단실시시기를 지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나 동제출대상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로 대폭 완화하였음.

〈개정내용〉

제99조의 2(건강진단실시계획서의 제출) ①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2월말까지 당해년도의 건강진단(정기적인 건강진단에 한한다) 실시시기를 별지 제21호 (14)서식에 기재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기 20일 전까지 특수건강진단실시계획을 별지 제21호 (15)서식에 의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결과 통보(제12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업무가 종전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되면 이를 공단에 송부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등 절차의 복잡성이 있었으나 동업무를 공단에 위탁하였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지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업무의 간소화를 도모하였음.

〈개정내용〉

제122조(계획서의 검토 등) ① 공단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를 당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건법 해설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착공중지나 계획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강화

(1) 건설업의 안전진단 대상사업장의 범위 확대(제126조)

건설업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하철 및 고속 전철 등에 따른 공사의 대형화에 대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진단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를 철도·도로·하천·건물 등을 관통하거나 인접하여 굴착하는 건설공사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한 것임.

〈개정내용〉

제126조(대상사업장의 종류)

① 1~2. 현행과 같음

3. 철도·도로·하천·건물 등을 관통하거나 인접하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4. 총연장 50미터 이상의 터널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5. 총연장 200미터 이상의 교량을 건설하거나 해체하는 건설공사

6.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2)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노동부장관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기준 명시(제13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협조의 요청) 제1항에 서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에 의거 시행규칙 제136조에 그 절차를 규정하였으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는 기준 등의 불명확으로 사실상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조 항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입법 취지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음.

① 협조의 요청요건을 종전에는 “건설공사 등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규정하였으나 개정규칙에서는 “건설업자인 사업주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동시에 3인(이 경우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전치 3월 이상인 부상자 2인은 사망자 1인으로 본다)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때”로 그 기준을 분명히 하였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예산회계법 제95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요청과 건설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로 명시하였다.

③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은 당해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주공사인 경우에 한하도록 명시하였고 그 요청기준을 별표 19에서 분명히 하였다.

〈별표 19〉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제136조 제2항 관련)

사망자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5명	4월
6~9명	6월
10명 이상	12월

※ 사망자수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수임.

④ 노동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다음의 세가지로 열

거하였다.

- 건설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 액의 결정에 있어서의 감액조치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따른 제한
-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

1. 붕괴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진단 등의 실시(제8조의 2)

건설작업이 행해지고 있는 사업장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의 사업주는 구조물·건축물 등이 그 자체의 무게나 하중·적설 또는 풍압 등으로 인하여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방지에 대해 문제발견형이라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조치를 하도록 신설함.

〈개정내용〉

제8조의 2(붕괴 등의 방지) 사업주는 구조물·건축물 기타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하중·적설·풍압 등으로 인하여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지보공 등의 안전조치(제363조)

거푸집 지보공의 상단부 미고정 및 지보공의 수직상태 불량으로 인한 슬라브 붕괴사고가 다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의 상하고정조치를 하도록 제3호를 개정함.

〈개정내용〉

제363조(거푸집 지보공 등 안전조치)

3. 지주의 상하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것.

3. 지반 등의 굴착시 위험방지(제383조)

현재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종전에는 인력으로 굴착작업을 하는 것에 한정하던 것을 인력을 포함한 모든 굴착작업시로 확대하였음.

〈개정내용〉

제383조(지반 등의 굴착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굴착면의 구배를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방심하면
조심하면
산업재해
안전작업